

# 새도서관법에 따른 전문도서관의 제문제

최 호 남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목 차

- I. 서 언
- II. 관련조항의 신·구 도서관법 및 시행령 비교
- III. 전문도서관 현황
- IV. 문제점
- V.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 VI. 결 어

### I. 서 언

오랫동안 도서관인들의 숙원사업이던 도서관법이 1987년 11월 28일자로 개정되었고 그에 따른 동 법 시행령이 1988년 8월 16일자로 개정 발효되므로써 도서관 발전의 새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 II. 관련 조항의 신·구 도서관법 및 시행령 비교

#### 신 도서관법·시행령

(제1장 총 칙)

법 제2조(정의)6. "전문도서관"이라함은 그 설립 기관, 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법 제3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

라 전문도서관의 발자취는 특수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었던 1955년부터 시작되어 그 역사는 일천한 바 있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라 그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이나 모체의 성격 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타 관중에 비해 발전 정도나 운영형태가 아주 다양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진다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도서관으로서 계속 발전하고자 한다면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의 요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도서관법의 전문도서관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구 도서관법·시행령

#### 신 설

법 제3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법 제4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 배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대학도서관 등의 이용 제공) 1항 대학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 할 수 있다.

2항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법 제6조(도서관의 시설·자료)1항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항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조(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

- (1) 공공도서관
- (2) 대학도서관
- (3) 학교도서관
- (4)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봉사대상	시설 및 자료기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이어야 한다.

(5) 특수도서관

법 제7조(사서직원 등) 1항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법 제7조

법 제4조(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치) 특수도서관과 그 설립자에 대하여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27조(일반의 이용에의 제공)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신 설

법 제5조(도서관 시설) 1항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건물, 도서관자료, 열람시설 및 기타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항 공공도서관은 그 환경과 시설이 이용에 편리하고, 보건·위생 또는 관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3항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조(도서관 시설기준) 1항 법 제5조 제3항의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공공도서관 시설기준

법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

1항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를 두어야 한다.

시행령 제6조(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 등의 배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사서직원,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

구 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초과하는 330제곱미터 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두며, 장서가 6천권 이상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둔다.
대학도서관	생략

구 분	배치기준
학교도서관	생략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 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 이상을 둔다.

법 제7조(사서직원등)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 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5조(사서직원의 자격 요건 등) 1항 법 제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2항 사서직원은 별표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기준) 1항 법 제6조 제1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직원,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1.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3. 실업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대학교의 대학을 제외한다)과 대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500인 이하인 때에는 2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학생수가 500인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하는 800인 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2항 법 제6조의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에는 그 도서관 건물 면적이 330평방미터 이하인 때에는 3인의 사서직원을 두며, 그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그초과하는 165평방미터마다 1인의 사서직원을 증치한다.

법 제6조(사서직원의 배치) 2항 사서직원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사서직원의 자격과 구분) 1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은 정사서와 준사서로 한다.

2항 정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1. 대학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이상

[별표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제5조 관련)

자 격	자격요건
1 급 정 사 서	1.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문교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도서관학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 급 정 사 서	1. 대학(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외의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

의 학력이 있는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학습을 320시간이상 이수한자.

3. 준사서로서 사서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이상 이수한 자.

3항 준사서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77.6.2.)

1. 초급대학 졸업자(실업고등전문학교 졸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재학중 또는 졸업후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5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이상 이수한 자.

2.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서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교육법 시행령 제1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서 부전공으로 도서관학을 이수한 자.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지정과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자 격	자격요건
	을 이수한 사람. 6. 대학을 졸업하여 준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1년이 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 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준 사 서	1. 전문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사 람. 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 를 포함 한다)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 기관에 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을 부전공 한 사람.

비고 :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 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서의 근무 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 이 110제곱미터, 자료가 1천500권(시청각 자 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법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1항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 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 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1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시 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2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 설

신 설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3항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법 제9조(도서관발전위원회) 1항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항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시행령 제7조(도서관발전위원회구성) 1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문교부, 체신부, 문화공보부, 과학기술처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
3. 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교수 기타 도서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항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2 장 국립중앙도서관)

법 제16조(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략)
2.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3.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 자료번호제도의 운영.

신 설

신 설

법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에 관한 문헌의 수집 및 보존
2. 국내의 서지의 작성 및 그 소개.
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

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 정보 협력망의 통합.

5.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 교류.

6.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 활동의 지도·지원

7.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8. 사서직원의 연수

9. (생략)

시행령 제16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1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교류 대상 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4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 및 대차
3. 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4. 사회교육활동 및 국민독서운동
5. 자료의 국제교류
6.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시행령 제18조(사서직원의 연수 등) 1항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

2항 사서직원의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한다.

4. 도서관학에 대한 조사·연구

5. 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학 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

### 신 설

시행령 제8조(국립중앙도서관의 타도서관에 대한 지도·원조)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원조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도서관자료의 기증 및 상호대차
3. 순회문고의 운영
4. 인쇄카드의 배부
5. 귀중한 문헌의 마이크로 복제와 배부
6. 기타 도서관업무의 기술향상

시행령 제5조(도서관업무의 강습)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양강습실시의 요청이 있거나 법 제17조 의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3항 사서직원의 연수대상·연수과정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4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직원의 연수를 다른 도서관이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항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항 납본의 절차·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9조(제공 및 납본자료 등) 1항 법 제17조제1항, 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 도
2. 음반, 비디오자료
3. 슬라이드
4.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5. 마이크로 형태물 중 창작된 자료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을 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 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

법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과 납본) 1항 국가 기관이 관보·도서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3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항 지방자치단체가 공보, 도서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3부를 국립중앙도서관과 그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에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3항 출판사 또는 전2항 이외의 자가 도서기타 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간행물의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4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한 자가 그 간행물에 대한 실비보상을 강구할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도서기타간행물의 납본) 1항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기타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을 납본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행물 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을 납본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본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4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5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법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1항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 받아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1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 번호로 구분한다.

2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한다.

4항 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5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법 제38조(설립등) 1항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2항 국가는 특정분야별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별 자료확보 및 도

신 설

신 설

신 설

서관 봉사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중에서 지정하여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군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5조(사립공공도서관 등의 등록)

법 제24조 및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설립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교육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9조(지도·감독) 1항 시·군교육장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2항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문교부장관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40조(준용)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시행령 제26조(사립공공도서관 등의 폐관 신고) 법 제28조제1항(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관할 시·군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1조(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1항 정부는 정보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도서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에 관한 시행령은 신설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법은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보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화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등의 표준화

3. 분담부서, 상호대차, 종합목록, 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항 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할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시행령 제29조(협력망 운영계획) 1항 중앙관의 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력망 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망의 각급 지역대표관의 지정 또는 변경
2. 협력망의 기능 수행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지도
3. 협력망 운영의 통할

법 제43조(지역대표관) 1항 지역대표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되, 공공도서관중에서 중앙도서관이 이를 지정한다.

2항 제1항의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지역협력망의 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

시행령 제28조(도서관협력망의 조직) 2항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 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의 공공도서관 중에서 이를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44조(지원·협력) 협력망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체제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45조(협력망의 운영)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8조(도서관정보협력망의 조직) 1항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정보협력망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장 별 칙)

법 제47조(과태료) 3항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2항(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특수도서관 또는 전문도서관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신 설

법 제29조(과태료)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간행물의 정가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설

III. 전문도서관 현황

1. 연도별 현황

년 도	도서관수(관)	직원수(명)	열람석수(석)	장서수(권)
1955년	15	103	526	187,374
1956	31	168	1,388	265,172
1957	42	202	1,730	442,153
1958	41	174	2,078	470,445
1959	45	183	1,802	509,256
1960	41	188	1,123	494,284
1962	46	245	1,658	552,884
1963	66	309	2,288	659,087
1964	72	420	2,654	541,284
1965	71	472	2,721	623,850
1966	81	520	2,680	827,864
1967	99	558	3,541	912,134
1968	111	622	2,772	1,113,857
1969	129	699	3,147	1,418,878

년 도	도서관수(관)	직원수(명)	열람석수(석)	장서수(권)
1971	142	464	3,328	1,579,574
1972	154	591	4,515	1,795,628
1973	161	729	5,288	1,787,392
1974	153	658	4,280	1,367,043
1975	96	632	2,695	1,296,556
1977	107	576	3,323	1,542,583
1979	165	738	3,858	1,549,010
1981	191	627	4,598	2,544,607
1984	229	790	7,295	3,565,428
1986	247	1,004	8,474	3,965,343
1987	262	1,015	9,985	4,839,990
1988	250	1,016	10,678	4,901,680

2. 지역별 분포 현황(1988년도)

(단위 : 개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52	5	4	4	4	33	4	1	18	2	-	7	14	2	250

3. 전문도서관 기준요건 구비현황(1988년도)

	구 비	미 비	조사대상	구 비 율	비 고
시 설 기 준	132개관	89개관	221개관	59.73%	29개관 자료 미제출
자 료 기 준	198개관	20개관	218개관	90.83%	32개관 자료 미제출
사서배치기준	44개관	192개관	236개관	18.64%	14개관 자료 미제출

※ 위 기준은 전문도서관이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개정법상의 시설·자료와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따른 것임.

※ 사서직원이 전무한 도서관도 35개관으로 조사대상 도서관(266개관)의 15.49%나 된다.

#### IV. 문 제 점

##### 1. 법 적용 배제

전문도서관과 관련하여 이번 개정된 법은 구 법과 비교하여 1)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작의 기준과 범위(법 8조, 시행령 6조) 조항의 신설, 2) 도서관 발전위원회조항(법 9조, 시행령 7조)의 신설, 3)자료의 제공 및 납본 조항(법 17조, 시행령 19조)의 강화, 4)국제표준자료번호 조항(법 19조, 시행령 20조)의 신설 5)도서관 정보협력망 조항(법 41조, 시행령 29조)의 신설 등을 통하여 도서관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과 국제간의 정보 교류와 선진 도서관 운영 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관련한 조항(법 38조~40조, 시행령 25~26조)을 신설하므로써 전문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법 제4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적용배제)에 의하면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위에 기술한 몇몇 특별한 규정 이외에는 법 적용을 배제하였고, 1)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 조항(법 6조, 시행령 3조), 2)사서직원 등의 배치기준 및 자격요건 조항(법 7조, 시행령 4~5조)은 전문도서관이 공중을 주된 봉사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전문도서관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마저도 제도안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단 한명의 사서직원도 없는 도서관이 15%나 되는 현실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 2. 직제상의 문제

상당수의 전문도서관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의 직속하에 있지 않고 행정부서의 과나 실에 속해 있어서 그 전문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경영자나 기관장에게까지 전달되는 기회가 줄어들어 그들의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구태의연한 인식을 타파하

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킬 기회가 적을 수 밖에 없다. 연도별 현황에서 보듯이 전문도서관은 국내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즉, 호경기일때는 전문도서관의 수가 급증 하다가 불경기일때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되어 왔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으레히 예산 또는 규모축소가 따르기 마련인데 도서관이 그 대상의 우선 순위에 오르는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하의상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특히 기업체 도서관의 경우 조직축소나 폐쇄, 예산삭감 등이 여타 도서관보다 심하기 때문에 사서직원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으로 열의와 창의력을 발휘 하기가 어렵다.

##### 3. 도서관 직원의 규모 및 자질문제

도서관 직원은 전문직으로서 사서는 물론 비전문직으로서 주제전문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번역 및 편집 담당자 등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비전문직 직원을 두고 있는 도서관도 극히 드물다. 전문도서관 중에서 적정 규모의 사서직원을 배치하고 있는 도서관도 고작 20%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서직원이 한 사람도 없이 일반 행정직이나 사무직 심지어는 일용직 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는 실정이다. 덴버대학의 명예교수 이스트릭(John Eastlick)은 1972년에 도서관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으며, 사회 흐름의 리더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저서 “The Third Wave(제3의 물결)”에서 우리들의 갖고 있는 기술적인 가능성의 결과로 엄청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이 사회 흐름의 리더로서 인식되지 않는 못할 망정 최소한 사회변화를 따라가는 정도로서라도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지 못한 도서관도 많다. 물론 일부 전문도서관은 사회 흐름과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서 타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그 발전 속도가 눈부신 바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도서관이 전문사서외에도 비전문직 직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

체 도서관이나 지방에 위치한 전문도서관은 아직도 적정 규모의 사서 인력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게 사실이고 그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 도전적 의욕을 가지고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사람보다는 현실에 안주 하려는 사람이 많은 것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 4. 예산문제

예산은 도서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사업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예산문제는 전문도서관 뿐 아니라 여러 관종의 도서관에서도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전문도서관 중에서 그 규모나 운영체도가 비교적 앞서 있는 KAIST의 경우를 보더라도 도서관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가상각비의 일부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법에서 도서관 예산의 기준이나 성격, 집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예산확보나 도서관 경영자의 소신있는 집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일부 기관에서는 도서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있는 편성 및 집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도서관 예산은 독립된 예산항목이 아니거나 기관내에 예산 설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5. 도서관간 협력문제

도서관의 정보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 간에는 필연적으로 상호협력의 이루어지게 된다. 전문도서관은 각자 모체의 성격, 목적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하여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 등과 같이 도서관 운영과 봉사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협력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실정이나 몇몇 유사한 성격의 전문도서관 끼리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새 도서관 법에서도 도서관간 협력을 중요시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으로 하여 특별시, 직할시, 도를 대표하는 지역대표관, 시·군·구를 대표하는 지방대표관을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도서관 협력망을 조직하는 조항(법 41조~45조)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중앙관이나 지역, 지방 대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들이 각급 협력망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뒤 따를지는 의문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도서관이 각급 협력망의 구심점이 되는 도서관들과 어떻게 연계하여 상호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문도서관 끼리의 협력망을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위에서 언급한 몇몇 협의체로서 연구단지 정보관리협의회,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등이 있으나 이처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없는 것도 이와 유사한 협의체의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된다.

#### 6. 전산화 문제

도서관 자동화와 정보기술 혁명은 약 20년전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도서관도 이제 전산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여러가지 형태의 전산화 추진 노력이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다. 특히 전문도서관은 컴퓨터를 이용한 도서관 자동화가 다른 종류의 도서관보다 급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신중히 검토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러 컴퓨터 시스템 중에서 자관에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는 문제는 물론 장차 도서관 네트워크에 참여했을때 정보처리 기법의 표준화 문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발표한 '국립중앙도서관 전산화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문헌처리 기법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내의 모든 도서관을 하나의 망으로 연결, 전국 도서관의 정보 지원을 총력화 하고 국내·외문헌정보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 시켜 교육문화 및 산업경제의 발전과 학술연구를 위한 국가의 정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케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체적 시행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서관법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중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통합조항(16조 4)이 들어있어 제도적인 기본 골격은 갖추었으나 전산화 및 정보협력망의 통합시에 반드시 필요한 각종 표준화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 V.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1. 부진한 전문도서관에 대한 제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강제력을 우선하여 마련되면 역작용이 우려되므로 먼저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도달한 도서관에 혜택을 주므로써 자발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적정 규모의 사서직원의 확보는 물론 비전문직의 인력도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 배치 기준을 다각화 해야 한다. 즉, 현재 또는 장차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는 비전문 특수직의 영역과 자격요건을 설정하도록 한다. 사서직원의 연수조항(법 16조8, 시행령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사서직원의 연수를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소속장에게 통지하고 소속장은 이들의 교육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제도화 한다.

3. 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심체를 공공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전문도서관을 비롯한 각급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지도하에 협력토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 보다 도서관 운영기법에 있어서 앞서 있는 전문도서관의 경우 정보협력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관종별로 다수의 대표관을 두어 관종별 대표관끼리 협력하도록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중앙관으로서 각급 대표관들

에 대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말도록 한다.

4. 전문도서관을 분야별, 유형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그룹지어진 도서관별끼리 공동으로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이 비용절감, 기술적 노력의 절감, 위험부담의 감소 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공동활용, 공동편목, 분담수서 등을 위한 표준화 노력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그룹별 전산화 추진은 향후 국가 전체의 도서관 정보망에 연계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의 통제에 따르도록 한다.

### VI. 결 어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은 앞으로 신기술에 적극 관계해야 사회 흐름의 리더로서 인식되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전문도서관은 그 봉사대상의 정보요구 수준이 높아가고 다양해 짐에따라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도서관들에 비해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나아가서 전체 도서관발전의 선두주자로서 새로운 변화에 항상 도전적인 의욕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발전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제도의 수정과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20여년 동안 제도적 장치의 뒷받침이 미약하여 경험했던 안타까운 심정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엔 신설된 도서관발전위원회에 거는 기대 또한 지대하다.

###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 1. 전화신청가능
-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군읍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부회비 2,000원 포함)
개인회원	10,000원	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의 직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